

2020년 제11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원당동 검단신도시 C10-1-3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서구청	심의일자	2020. 11. 30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○○○○개발(주)			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지구		
	지 번	C10-1-3	관련지번	
	대지면적	1,273 m 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	일반상업지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890.3 m ²	건폐율	69.94 %
	주 용 도	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
	최고높이	36.9 m	용적률	499.59 %
			층수 지하: 3층 / 지상: 8층	건축물 동수 1동
			연면적 합계	9,684.294 m 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
	(건축계획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상1층 장애인 출입 가능한 경사로 단면(기울기) 검토 요함(법적 사항일 경우 건축허가 시 반영 바람) ○ 실외기 설치를 위한 처마돌출 부분에 대한 출입문 설치 요함 		
	(경관계획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북측에 설치하는 좁은 옥상 테라스 환경이 주 도로 가로 환경에 저해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Design 요소(데코레이션 또는 야간 조명 등) 활용하여 정리 요함 ○ 1층 주출입구 부분은 층간 구간에 가로바 설치 및 채도 상향 조절하는 등 일부 수정 요함 ○ 기준층(4~7층) 좌측 코너와 배면코너의 연결부분은 격자형태로 조정하여 처리할 것 		
	(기 타)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변경된 투시도와 같이 각 층 평면도 수정 요함(투시도 상 측면이 커튼월로 되어 있어 기둥이 후퇴되어 설치되어야 함) ○ 사전검토 의견의 조치계획 및 건축위원회의 제시조건에 대하여 건축 인·허가(사업계획 승인) 시 반영할 것 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O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	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 			